

분류 번호		주 택 30411-84	기 안 용 지		개별 관 찰부과금	
보증기간		영구·준 10/5/1			구 지 장	
수 선 카 보증기간						
사행일자		88. 12.				
보 조 기 관		부 처 장 <i>이</i>			등 록 기 관	
주 택 관 장		도 시장 비국장 <i>이</i>			발 송 장	
기안 핵심자		배한성(윤영상) <i>이</i>				
부 처 장 주 체 소		주 암 장 조 <i>이</i>				
주 체 소		민영주택건설 사업자회 주				
(제 1 항) 내부문서						
<p>1. 우리구 관내 동 68번지 동 68번지 60호의 2 일자 지산 이 면적과 규모 민영주택건설 사업자회 주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 축적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여 다음과 같이 승인로제 합니다.</p>						
<p>2. 승인내역</p> <p>주. 사업주체: 주식회사 <i>이</i> 관 나. 사업위치: 종로구 관내 동 68번지 60호의 2 일자</p> <p>다. 규모: 연면적 250평 미만</p> <p>라. 단면: 5m</p>						

마. 기 담 : 승인조건 법정.

첨 부 :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.

(제 2 안)

수 신 (주) 영광래 금 윤석 (성년 1970. 00- 00)

제 복 동 건

1. 과학 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종량구 3동 66번지 36호와

본 편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 측 진법

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합니다.

2. 본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측 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

건축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기획법 제 4조, 제 12조, 제 24조

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적스인 또는 협약을 가름 하오니 위 관련 재법규

에 의한 우리구의 지도 감독을 받아 착공, 준공지도 및 준공 보고등을

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,

3. 본 사업시행에 따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를 교부

코자 하오니 며칠새 및 자하천 공체 매입증명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마. 승인개요

구 분	규 모	기 축	비 고
연립 주택	동수 층수 가구수 1 3 27 1124.0	대지면적 인허적 1630.5 37.0 36.0	

첨 부 : 승인조건 1부 (별첨)

(제 3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동 건

1. 아래와 같이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
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5조의 건축허가 및 도시
계획법 제4조, 제12조, 제24조, 제25조에 의한 건전승인 또는 협약을
가름 하는 사업승인을 하였기 독보 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2. 승인내역

가. 사업주체 : 주식회사

성성주택 건설부

(성수동 220-365)

나. 건설위치 : 종량구 성수동 68번지 2층 호외 2평지

다. 건설내용 : (제2안 가항 이기시행)

수신처 : 서울시교육감, 한국주택주택주식회사,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,
동 대문소방서장,

(제 4 안)

수 신 서울특별시장

참 조 주택기획과

제 목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척리

1. 주택 30471 - 140(87. 2. 11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빙점과 같이 ~~연평균 전년~~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

주택건설 측면법 제 33조 등 시행규칙 제 19조 제 7항의 규정에 의거

신규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기 보고합니다.

가. 승인내용 : (제 2만 가 항 이기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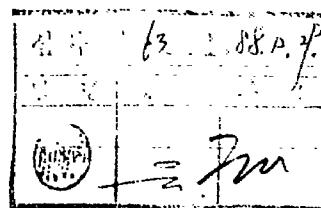
첨 부 :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서 1부.

승인조건

1부.



(제 5 안)



수 신 : 서울특별시 공보실장

제 목 : 관보 (시보) 제재 의뢰

1. 주택건설 측면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사업계획

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관보

(시보)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1.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.

2. 민영주택 사업계획 고시안 1부.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제

서울특별시 제 호

주택건설 측진법 제 3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량구 6동

68 번지 38 호외 2 필지 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
별첨 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~~1988년 1월 1일~~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

2. 사업주체 : 주식회사

3.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

가. 위치 : 종량구 6동 68 번지 38 호외 2 필지

나. 대지면적 :

다. 규모 : 민영주택 3층 6동 27세대.

4. 사업기간 : 88. 12 ~ 89. 12.

(제 6 항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

1. 우 리구에 세출된 종량구 6동 68 번지 38 호외 2 필지
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수 있는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주목하라.

측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관리

및 도시계획법 제4조, 제12조, 제24조,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

승인 또는 허가를 가름하니 기히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거 관련 재법규

및 규정에 따로 기초 및 중간 검사는 물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

할것이며,

2. 사업승인 내역 및 승인조건들을 검토 하여 관련 법령등에
의해통이 없도록 치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것.

첨 부 : 1.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.

2. 공 고 안 1부.

3. 승 인 조 건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정비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토목과, 수도공사과, 환경과,

동사료소. 재무과장.

• 그들이 주제를 제작하는 주제를 주제로 한다.

1. 사업주체: (주) 경성제강

2. 사 읍 위 치 : 중랑구 on 68번지 3층 호외 지피지

3. 사 어 탕: 1934년 3월 1일 ~ 27년대

4. 사정비: 877,200,000 원

5. 호당구 모및사업비 : 500만 원

5. 算法：

(1) 국민주택자금 :	주, 원
(2) 금융자금 :	주, 원
(3) 입주자부담금 :	주, 원
(4) 사업주책자금 :	87,200 주, 원
(5) 주택은행민원자금 :	주, 원
(6) 기타자금 :	주, 원

7. 사업 기간 : 징기 : 1988. 12

준지 : 1989. 12

8. 善 而 不 善 事 事 :

संस्कृत
..
रुद्र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제 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6동
68번지 38호외 2필지상에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
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12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: 68-38호외 2필지

2. 사업주체: 68-38호외 2필지

3.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

가. 위치: 종로구 6동 68번지 38호외 2필지

나. 대지면적: 117.04m²

다. 규모: 68-38호외 2층, 18~27세대

4. 사업기간: 1988. 12. ~ 1990. 12.